

전국해양기능구획(2011~2020)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jina7@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중국 해양 개발 현황
2. 「전국해양기능구획(2011~2020)」의 주요 내용
3. 11개 성·시별 「해양기능구획(2011~2020)」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 ▣ 2002년부터 실시된 「전국해양기능구획」 이후 해양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0년 해양 총생산량은 중국 내 총생산량의 10%를 차지하였고, 연해 항구는 약 150개에 달하며 그 중 8개 항구의 물동량이 세계 10위권 이내를 기록함.
 - 2010년 해양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은 전국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였고, 해양관광업의 부가가치가 해양산업 부가가치의 22%를 차지하면서 해양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지주산업이 됨.
- ▣ 2012년 3월 3일 국무원이 비준한 「전국해양기능구획(2011~2020)」은 6대 목표와 8대 해양기능구 및 29개 중점 해역을 제시함.

 - 2020년까지 △ 해역관리기능 강화 및 해역 사용권자의 권익 보호 △ 해양보호구의 중국 관할 해역에서의 면적비중 5% 이상 달성 △ 어로해역의 안정보장 △ 바다매립규모의 합리적 통제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육지부 해안선 중 자연해안선 비중 35% 이상 달성 △ 해역 해안벨트의 정비·복원 실시 및 2,000km 이상 해안선의 정비·복원 등을 골자로 함.
 - 해양기능구에 따라 관할 해역을 △ 주요 어종양식 보호를 위한 농어업구 △ 항구·항로 건설을 위한 항구운송구 △ 임해공업과 연해도시 발전에 적합한 공업·도시용 해구 △ 자원·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이용되는 광산·에너지구 △ 관광자원 개발에 이용되는 관광·레저오락구 △ 해양자원과 생태 보호에 사용되는 해양보호구 △ 특수 목적에 따른 기타 사용을 위한 특수 이용구 △ 향후 개발을 위한 보류구 해역으로 구분함.
 - 자연조건과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따라 29개 중점 해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기능과 개발·보호 방향을 확정함.
- ▣ 「전국해양기능구획」 비준 이후 국무원은 11개 성·시의 「해양기능구획(2011~2020)」을 비준함.

 - 성·시 구획은 △ 바다매립 등 바다의 자연속성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합리적으로 통제 △ 어민의 생산활동과 어업의 현대화 발전을 보장 △ 주요 오염물 배출량 통제를 통해 해양생태환경 개선 △ 해양의 지속가능발전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1. 중국 해양 개발 현황

- 2002년 비준된 「전국해양기능구획」 실시 이후 해양경제가 빠르게 발전함.
 - 중국의 육지분 해안선은 북쪽의 압록강 하구에서부터 남쪽의 베이룬허(北仑河) 하구까지로 약 1만 8,000km에 달하며 해안지형이 다양하고 해양자원이 풍부하여 개발잠재력이 매우 큼.
 - 2010년 해양 총생산량은 국내 총생산량의 10%를 차지하였고 해양산업 종사자가 3,30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수산물 생산량이 2,978만 톤으로 2002년 대비 26% 증가하는 등 연해지역 해양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견인하였음.
 - 2010년 연해항구는 약 150개로 연 화물 물동량이 56억 4,500만 톤으로 2002년 대비 228% 증가하였고, 그 중 8개 항구의 물동량이 세계 10위 이내임.
 - 2010년 해양 석유·천연가스의 연 생산량은 5,000TOE(석유환산톤)를 초과하여 중국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함.
 - 2010년 해안관광업의 부가가치는 해양산업 부가가치의 22%를 차지하면서 해양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지주산업이 되었음.
- 2012년 3월 3일 국무원이 비준한 「전국해양기능구획(2011~2020)」(이하 구획)¹⁾은 6대 목표와 8대 해양기능구 및 29개 중점 해역을 제시함.
 - 2002년 비준한 「전국해양기능구획」을 바탕으로 『해역사용관리법』²⁾ 『해양환경보호법』³⁾ 등의 법률과 해양 개발·보호와 관련된 방침·정책에 의거하여 구획을 비준함.

2. 「전국해양기능구획(2011~2020)」의 주요 내용

가. 6대 목표

- 거시적 종합통제 차원에서의 해역관리기능 강화
 - 해역관리에 필요한 법률·경제·행정·기술 등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해양기능구획의 종합통제

1) 全国海洋功能区划(2011~2020年).

2) 海域使用管理法.

3) 海洋环境保护法.

- 해역사용권에 대한 시장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완비하여 해역의 국가소유권과 해역사용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 해양생태환경의 개선 및 해양보호구역 면적의 확대

- 주요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 오염이 심각한 해역의 환경을 개선함.
- 해양생태가 악화되고 있는 해역의 해양생태 악화를 억제하고 일부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함.
-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의 총면적과 연안해역 해양보호구의 총면적이 중국 관할 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 이상, 11% 이상이 되도록 함.

■ 어로해역의 기본적 안정 보장 및 수생생물자원 보호

- 어민의 생산 활동과 현대화 어업 발전을 위한 해역을 보장하고, 중요 어업수역·수생 야생동식물과 수생생물자원 보호구를 효율적으로 보호함.
- 2020년까지 수역 생태환경을 점진적으로 복원하고 어업자원의 감소와 멸종위기 동식물 증가를 억제함.
- 어업자원의 규모에 따라 어획능력과 어획량을 조절하며 해양양식업 기능구의 해역면적 260만 헥타르 이상을 확보함.

■ 바다매립규모의 합리적 통제

- 바다매립 연도별 계획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여 바다매립의 지나치게 빠른 증가추세를 억제함.
- 바다매립면적을 통제하여 국민경제 거시조절요구와 해양생태환경 수용능력에 부합하도록 함.

■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공간자원 확보

- 특별 관리해역을 지정하고 개발제한을 단계적으로 엄격히 실시하여 향후 발전에 필요한 연안 해역을 확보함.
- 전국 연안 해역 보호구역의 면적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하며 해안선을 점용한 개발이용행위를 엄격히 제한함.
- 2020년까지 육지부 해안선(자연해안선+인공해안선)에서 자연해안선의 비중이 35% 이상 되도록 함.

■ 해역해안벨트의 정비·복원 실시

-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의 심각한 훼손 생태기능 퇴화 재해예방능력이 약화되고 이용효율이 저하된 해역해안벨트를 중점적으로 정비·복원하며, 2020년까지 2,000km 이상의 해안선을 정비·복원함.

나. 8대 해양기능구

■ 농어업구(农业渔区)

- 농어업구는 농업개간, 어항(渔港)과 육종장 등 어업 기초시설 건설, 해양양식과 어장 생산 및 주요 어종의 양식보호에 사용되는 해역으로 농업개간구, 어업 기초 시설구, 양식구, 증식구, 어장구, 수산물 자원보호구가 있음.
- 농어업구 개발 시 개간 규모와 용도를 규제하고 어항 및 원양기지 건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해안선과 해역공간을 집약적으로 이용함.
- 전통 해양양식 바다면적을 안정화하고 해양양식과 현대화 바다목장을 집약적으로 발전시킴.
-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요한 산란장·색이장·월동장 등 내에서의 바다 이용을 엄격히 통제함.

표 1. 주요 농어업구

구분	내용
농업개간구	장쑤(江苏),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및 푸젠(福建) 연해지역에 분포함.
어업 기초시설구	주로 국가중심어항, 1급 어항, 원양어업기지가 있음.
양식·증식구	황하이(黄海) 북부, 창산군도(长山群岛) 주변, 랴오둥만(辽东湾) 북부, 허베이(冀)동부, 황하(黄河) 하구·라이저우만(莱州湾), 옌타이(烟台)·웨이하이(威海) 근해, 하이저우만(海州湾), 장쑤푸셔샤저우(江苏辐射沙洲), 단산군도(丹山群岛), 푸젠·저장(闽浙) 연해, 광둥(粤) 동부와 서부, 베이부만(北部湾), 하이난도(海南岛) 주변 등 해역에 분포
어장구	보하이(渤海), 단산, 스타오(石岛), 뤼쓰(吕泗), 푸젠(福建) 동부·중부, 푸젠 남부·타이완 쉰탄(台湾浅滩), 주장커우(珠江口), 베이부만 및 동샤(东沙), 시사(西沙), 중샤(中沙), 난샤(南沙) 등 어장구가 있음.
수산물 자원보호구	쌍타이쯔(双台子) 하구, 라이저우만, 황하 하구, 하이저우만, 러칭만(乐清湾), 관징양(官井洋), 하이링만(海陵湾), 베이부만, 동하이 대륙붕, 시사(西沙) 부근 등 해역에 분포

■ 항구운송구(港口航运区)

- 항구운송구는 항구항로자원 개발·이용과 항구·항로·정박지 건설에 적합한 해역으로 항구구(港口区), 항로구(航道区), 정박지구(锚地区)가 있음.
- 항구 해안선 자원통합을 심화하고 항구구조를 최적화하며 항구 건설규모와 진행속도를 합리적으로 통제함.
- 연해 주요 항구와 해운 항로 및 정박지 수역기능을 유지하고 해상운송의 안전을 보장함.

표 2. 주요 항구운송구

구분	내용
항구구	다롄항(大连港), 잉커우(营口)항, 친황다오(秦皇島)항, 탕산(唐山)항, 텐진(天津)항, 옌타이항, 칭다오(靑島)항, 르자오(日照)항, 쉰윈강(连云港)항, 난통(南通)항, 상하이항, 닝보(宁波)·단산항, 윈저우(温州)항, 푸저우(福州)항, 샤먼(厦門)항, 산터우(汕頭)항, 선전(深圳)항, 광저우(广州)항, 주하이(珠海)항, 잔장(湛江)항, 하이커우(海口)항, 베이부만항 등이 있음.
항로구	중요한 해운 항로로 보하이 해협, 청산터우(戚山头) 부근 해역, 창장커우(长江口), 단산군도 해역, 타이완 해협, 주장커우, 치웅저우(琼州) 해협 등이 있음.
정박지구	중점 항구와 중요 해운항로 주변 인근 해역에 분포함.

■ 공업·도시용 해구(工业与城镇用海区)

- 공업·도시용 해구는 임해공업과 연해도시 발전에 적합한 해역으로 공업용 해구와 도시용 해구가 있음.
 - 공업·도시용 해구는 주로 연해 대·중도시와 중요 항구 인접 해역에 분포함.
- 국가지역발전전략으로 확정된 건설에 우선하여 해역을 제공하고 국가급 종합개혁실험구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순환경제시범구 보세항구 등 해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 국가산업정책에서 장려하는 산업해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사용이 많고 오염이 심한 자원 소비형 공업에 대하여 바다 이용을 엄격히 제한함.
- 바다를 이용한 사회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연해안선과 해안경관의 보호를 강화하며 생활에 편리한 해안생태환경을 조성함.

■ 광산·에너지구(矿产与能源区)

- 광산·에너지구는 광산자원과 해상에너지 개발·이용, 석유 천연가스와 고체광산 등 탐사 개발 및 염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개발이용에 적합한 해역으로 석유·천연가스구, 고체광산구, 염전구, 재생가능에너지구가 있음.
- 석유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바다를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해양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을 지원함.

표 3. 주요 광산·에너지구

구분	내용
석유·천연가스구	주로 보하이만 분지(해상), 베이황하이(北黄海) 분지, 난황하이(南黄海) 분지, 동하이(东海) 분지, 타이시(台西) 분지, 주장커우 분지, 치용동난(琼东南) 분지, 잉거하이(莺歌海) 분지, 베이부만 분지, 난하이남부(南海南部) 퇴적 분지 등 석유·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된 해역에 분포함.
염전구	주로 랴오둥만(辽东湾), 창루(长芦), 라이저우만, 후이베이(淮北) 등 염업 발달지역이 있음.
재생가능에너지구	저장(浙江)·푸젠·광둥 등의 근해 조석에너지구, 푸젠·광둥·하이난·산둥 연해지역의 파랑에너지구, 저장단산군도·랴오닝따싼도(辽宁大三岛)·푸젠위산도(嵛山岛)·하이탄도(海坛岛) 해역의 조류에너지구, 해안·근해의 풍력에너지 분포지역을 포함함.

■ **관광·레저오락구(旅游休闲娱乐区)**

- 해안 해상 관광자원 개발 및 이용에 적합한 해역으로 관광지 개발과 해상 오락시설 건설에 사용됨.
- 관광 레저오락구로는 연해 국가급 풍경명승구, 국가급 관광리조트, 국가 5A급 관광지, 국가급 지질공원, 국가급 산림공원 등이 인접한 해역 및 기타 관광자원이 풍부한 해역이 있음.
- 관광·레저오락구 개발 건설 시 개발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공간구조 개선을 통하여 해안산·해만·해도 등 중요 관광자원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며 관광활동이 해양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생태환경보호정책을 엄격히 실시하여 해안자연경관과 모래사장자원을 보호함.

■ **해양보호구(海洋保护区)**

- 해양보호구는 해양자원·환경·생태 보호에 사용되는 해역으로 해양자연보호구와 해양특별보호구가 있음.
- 해양보호구는 주로 압록강 하구, 랴오둥 반도 서부, 황타이쯔 하구, 보하이만 황하이 하구, 산둥반도 동부, 쑤베이(苏北), 창장커우, 항저우만(杭州湾), 단산군도, 저민(浙闽) 연안, 주장커우, 레이저우(雷州) 반도, 베이부만, 하이난도 주변 등 근해지역에 분포함.
- 관련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현존하는 해양보호구와 해양특별보호구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자연보호구와 해양특별보호구 신설을 통해 해양보호구 규모를 확대함.
- 해양보호구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생태 보호와 주변 해역 개발·이용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

■ **특수 이용구(特殊利用区)**

- 특별한 목적에 의한 기타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해역으로 해저케이블 매설·교량 건설·오수배출량 목

- 표달성 등에 사용되는 특수 이용구를 포함함.
- 해저케이블·해상교량 터널에 이용된 해역 내에 기타 영구성 건축물 건설을 금지하고 각종 해상 활동 시 해저케이블 교량 해저터널 보호를 의무화함.
- 주변 기능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수배출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감시를 강화함.

■ 개발보류구(保留區)

- 향후 자원개발을 위해 보류한 해역으로 2020년까지 개발이 제한된 해역임.
- 경제·사회적인 요인으로 잠시 개발·이용되지 않거나 기능구로서의 기능 확립이 분명하지 않은 해역, 과학기술 등의 요인으로 현재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용할 수 없는 해역,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보류된 해역이 있음.

다. 5대 해역의 주요 기능⁴⁾

■ 보하이(渤海)

- 보하이의 육지부 해안선은 라오테산자오(老铁山角)부터 펑라이자오(蓬莱角)까지로 길이가 약 2,700km이며 랴오닝성(일부), 허베이성, 텐진시와 산둥성(일부)를 포함한 연해지역은 해역면적이 약 7만 7,000km²에 달함.
- 보하이 해역의 중점 해역으로는 랴오둥 반도 서부 해역, 랴오허(辽河)강 삼각주 해역, 랴오시 지동(辽西冀东) 해역, 보하이만 해역, 황하 하구와 산둥 반도 서북부 해역, 보하이 중부 해역이 있음.
- 보하이의 바다매립 관리와 통제 정책을 엄격히 실시하고 대규모 바다매립을 제한하며 환보하이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해역자원의 지나친 소모를 줄이고 해안선과 해역자원 절약과 집약적 이용을 도모함.
- 엄격한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중점 해역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제도를 실시하며 어로해역에 대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함.
- 해상 석유 천연가스 탐사와 개발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해상 기름유출과 적조 등 해양환경재해 및 긴급사태 발생을 예방하고 보하이 해협지역 해상항로의 교통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함.
- 탕산(唐山) 차오펬이텐신구(曹妃甸新区), 텐진 빈하이(滨海)신구, 창저우(沧州) 보하이신구 등 임해공업과 생태도시의 집약적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쑹타이쯔 하구와 황하이 하구 등 연안 습지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보호함.

4) 구획은 중국 관할 해역을 보하이, 황하이, 동하이, 난하이, 타이완 동쪽 해역으로 확정하였으나 타이완 동쪽 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 황하이(黄海)

- 황하이의 육지부 해안선은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부터 장쑤(江苏)성 치동자오(启东角)까지 약 4,000km에 달하며 랴오닝성(일부), 산둥성(일부), 장쑤성을 포함한 연해지역은 해역면적이 38만km²에 달함.
- 황하이 중점 해역으로 랴오둥 반도 동부 해역, 산둥 반도 동부·남부 해역, 장쑤 연안 해역, 황하이 대륙붕 해역이 있음.
- 황하이 해역은 기반암 항만이 발달되어 있고 해안지형 경관이 다양하며 해양생태계가 다양함.
- 심수항만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전통 양식에 이용되는 해역을 확보하며 현대화된 해양목장을 건설함.
- 다롄, 칭다오 등 연해 주요 도시 주변 연해관광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압록강 하구 등 연안 습지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보호함.

■ 동하이(东海)

- 동하이의 육지부 해안선은 장쑤성 치동자오에서 푸젠성 자오안테루(诏安铁炉)항까지 약 5,700km에 달하며 장쑤성 일부, 상하이시, 저장성, 푸젠성을 포함한 연해지역은 해역면적이 77만km²에 달함.
- 동하이의 중점 해역으로 창장 삼각주 및 단산군도 해역, 저장성 중·남부해역, 푸젠성 동부·중부·남부 해역, 동하이 대륙붕 해역, 타이완 해협 해역이 있음.
- 수많은 항만과 도서, 풍부한 연안 습지 자원,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동하이 해역에 국제항구와 임항산업을 발전시키고 해만(海湾) 매립을 제한하며 대륙붕 석유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을 강화함.
- 상하이항, 닝보·단산항을 핵심으로 한 해운서비스업과 해양선진제조업 발전을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저장 단산군도신구와 해협서안(海峡西岸) 경제구 건설을 지원하여 섬지역의 개발개방을 추진함.
- 석유 천연가스자원과 천해 사광자원의 탐사개발을 강화하고 동하이 석유천연가스 개발기지를 건설하며 전통 자원어업구(传统渔业资源区)의 복원 및 합리적인 이용을 강화함.
- 군도(群岛) 생태계와 홍수림, 산호초 등 연안 습지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보호함.

■ 난하이(南海)

- 난하이의 육지부 해안선은 푸젠성 자오안테루항에서부터 광시(广西)장족자치구의 베이룬하 하구까지로 그 길이가 5,800km에 달하며 광둥, 광시, 하이난 3개 성을 포함한 연해지역은 자연해역면적이 약 350만km²에 달함.
- 난하이의 중점 해역으로 광둥성 동부 해역, 주장(珠江) 삼각주, 광둥성 서부 해역, 광시장족자치구의 동부·서부 해역, 하이난도의 동북부·서남부 해역, 난하이의 북부·중부·남부 해역이 있음.
- 광산자원, 도서관광자원, 해양에너지자원, 아열대생물자원이 풍부하고 산호초, 홍수림, 해초지 등 열대생태계 분포지역임.

- 난하이 해역의 해양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북부 연안 해역, 특히 하구·해만 해역 매립규모를 엄격히 통제하여 도서와 산호초를 보호대상으로 한 보호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수생야생동물보호구와 수생생물자원보호구 건설을 강화함.
- 중요 해도(海島)의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여 난하이 어업 발전을 추진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함.
- 해양생물, 석유·천연가스 등 광산자원 조사와 심해과학기술연구를 실시하여 난하이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추진함.

라. 7대 시행조치

■ 총체적인 통제역할 수행

- 구획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역할을 강화하고 전국해양기능구획에 의거하여 성급 해양기능구획을 작성해야 함.
- 구획은 해양과 관련된 각급 각종 구획 작성을 위한 기본 근거이자 해양개발 이용과 환경보호정책을 작성하는 기본 플랫폼으로 어업, 염업, 교통, 관광, 재생가능에너지, 해저케이블 등 산업구획이 해역 사용과 관련된 경우 해양기능구획에 반드시 부합해야 함.
- 연해토지 이용의 총체적 구획, 도농 구획, 항구 구획과 관련된 해역 사용의 경우 해양기능구획과 상호 연결되어야 함.

■ 해역 사용 관리수준의 전면적 제고

- 구획에 의거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바다 사용을 심사 비준하여야 함.
- 해양 분야 건설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보고서 또는 프로젝트 신청보고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기 전 해양행정주관기관에 해역사용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 국가산업정책이 권장하는 산업, 전략적 신흥산업, 사회공익사업의 바다 이용을 중점적으로 보장함.
- 각종 건설프로젝트의 해역 사용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상황에 따라 해역사용금 징수기준을 조정하도록 하여 해역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함.
- 해역사용권의 입찰 경매 및 양도를 추진하고 해역사용권의 양도·임대·담보 행위를 규범화하고 해역가치평가제도를 구축하여 해역사용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함.

■ 바다매립관리의 혁신 및 강화

- 바다매립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집약적 이용·생태보호·해양·육지통합

의 원칙에 따라 전국 바다매립계획을 제정하고 절차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연도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바다매립계획 집행 현황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강화하고 지역의 해역 사용 계획·검토·심사·비준과 바다매립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바다매립프로젝트 선정과 평면설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해안과 중요 연안 습지의 바다매립을 제한함.
- 바다매립의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준공검수제도를 완비하며 방치된 해역사용권 회수제도를 연구·구축함.

■ 해양환경 보호 및 생태 건설 강화

- 해양·육지 통합 발전을 위하여 연해지역에서 고에너지 소모·고오염·자원 소모형 산업을 제한하고 주요 오염물 배출량 통제제도를 실시함.
- 해양기능구의 환경기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해양기능구 환경조사와 검사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해양보호구 네트워크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 해양환경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환경 긴급사태 대응시스템을 완비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건설·관리를 규범화함.
- 해양생태복원작업을 추진하고 해역생태서비스 가치와 경제적 이익증대를 꾀함.
- 중요 어업해역, 수생생물자원 보호구, 수생야생 동식물 보호구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며 해양수생생물 다양성을 유지·보호하고 어업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함.

■ 계획 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 해역관리 과학기술기준체계를 구축 보완함.
- 계획에서 규정한 목표에 따라 해역해안 일대 치유·복원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중요 해안·하구·관광지 및 대·중도시 인접 해역의 치유·복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함.
- 중앙과 지방의 해역사용금 수입으로 해역해안 일대의 종합적인 치유·복원 작업을 적극 지원함.

■ 모든 관할 해역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체계 구축

- 국가·성·시·현급 정부의 해역 동적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위성과 항공 원격탐사, 원격감사·제어, 현장 모니터링 등 방법을 이용하여 관할 해역을 관측함.
- 해양개발 불법 이용 고발제도를 구축 완비하고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강화함.
- 중요 해역의 순찰 감시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각종 해양과 관련된 활동을 효율적으로 감독 관리함.

- 해양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탐사 개발, 해저케이블 매설 및 석유관 등 작업활동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해상통로 안전을 확보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함.

■ 구획 실시를 보장한 법률제도 및 체계 메커니즘의 완비

-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수정하여 해양기능구획의 실시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구축함.
- 군사용 해역 관리, 바다매립 관리, 해상인공건축물 관리 등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및 기타 해역 사용활동관리제도를 탐색하여 구축함.

3. 11개 성·시별 「해양기능구획(2011~2020)」의 주요 내용

■ 국무원은 연해지역 11개 성·시별 「해양기능구획(2011-2020)」을 비준함.⁵⁾

- 11개 성·시는 「전국해양기능구획」에 의거하여 성급 해양기능구획을 작성하였으며, 각 구획은 건설용 매립규모와 오수 배출량 도달 등의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성·시의 구획은 2020년까지 바다매립 등 해역자연속성을 변화시키는 바다개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어민의 생산활동과 어업의 현대화 발전을 보장하고, 주요 오염물 총량이 통제를 받도록 하며, 해양생태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여 해양의 지속가능 발전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KIEP**

표 4. 11개 성·시 해양기능구획의 주요 목표

	건설용 바다 매립지 면적(헥타르)	해수양식기능구 면적(헥타르)	해양보호구역 면적	육지분 자연해안선 보유율(%)	해안선 복원 (km)
톈진시	9,200 이내	≥0.6만	≥1만 헥타르	-	-
허베이	14,950 이내	≥12만	≥구획 면적의 5%	≥35	≥80
랴오닝	25,300 이내	≥55만	≥구획 면적의 11%	≥35	≥200
장쑤	26,450 이내	≥30만	≥관할 해역 면적의 11%	≥35	≥300
저장	50,600 이내	≥10만	≥관할 해역 면적의 11%	≥35	≥300
푸젠	33,350 이내	≥15.3만	≥구획 면적의 11.9%	≥37	≥300
산둥	34,500 이내	55만	≥관할 해역 면적의 11%	≥40	≥240
광시	16,100 이내	≥20만	≥관할 해역 면적의 11%	≥35	≥360
상하이	2,300 이내	≥600	≥12.3만	-	≥60
광둥	23,000 이내	≥25만	≥59만	≥35	≥400
하이난	11,150 이내	≥40만	≥관할 해역 면적의 5%	≥55	≥200

5) 국무원은 2012년 10월 10일에 산둥, 저장, 장쑤, 푸젠, 톈진, 허베이, 광시, 랴오닝 등 8개 성·시의 해양기능구획을 동시에 비준하고 2012년 11월 6일에 상하이, 광둥, 하이난 성·시의 해양기능구획을 동시에 비준함.

참고자료

- 『国务院批准《全国海洋功能区划(2011-2020年)》』(2012年 4月 26日), 『国家海洋局』.
- 『沿海11个海洋功能区划获批』(2012年 11月 18日), 『新华网』.
- 『国务院一日批复8省市海洋功能区划 明确填海规模』(2012年 10月 16日), 『中国网』.
- 『国务院批复上海 广东 海南海洋功能区划』(2012年 11月 6日), 『新华网』.
- 『《全国海洋功能区划》公布 明确5大海区管控要求』(2012年 4月 26日), 『中国网』.
- 『《全国海洋功能区划》解读』(2012年 6月 18日), 『中国海洋报』.
- 『全国海洋功能区划(2011~2020年)』(2012年 4月 18日), 『中国海洋报』.

자료 정리: 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신금미(nhsimny@hotmail.com)